**용역계약서**

|  |  |
| --- | --- |
| **위임자(갑) :** | 이촌회계법인 |
| **수임자(을) :** | 그루구루 |

위 갑·을 당사자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갑에 대한 대리 권한을 위임하며, 을의 구체적인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조회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한다.

**제2조(보수)** 본 계약 제1조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금 육백만원정(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변동사유 등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3조(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종료시점까지로 하고, 해지할 경우는 그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요인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은 보수의 조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다.

**제4조(의무)** 갑은 본 계약상 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 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을은 본 계약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 갑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해약의 책임)** ①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이후 발생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을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그 시점까지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갑과 을은 상호협의하여 본 계약 업무를 종결시키기로 한다.

**제7조(업무수행의 불능)** ①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은 월정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을 쌍방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을의 면책)** ①갑이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진다.

②갑은 을의 용역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갑은 급여관련 용역과 관련하여 을에게 어떠한 배상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은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수령한 용역의 보수금액을 한도로 갑에게 배상한다.

**제9조(조서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을이 작성한 조서, 기타 전자문서나 전자파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제10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결정한다.

**제11조(발효일)**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날 또는 업무착수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소지한다.

|  |  |
| --- | --- |
|  | 2024 년 8월 30일 |
|  |  |
| **위임자(갑)** |  |
| 주 소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
| 상 호 : | 이촌회계법인 |
| 대 표 : | 이 한 선 (인) |
|  |  |
| **수임자(을)** |  |
| 주 소 :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57번길 5-8 |
| 상 호 : | 그루구루 |
| 대 표 : | 김 그 루 (인) |